



경기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-0199

- * 24시간 자살 및 정신건강 관련 상담
- *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로 연계

[주간 - 월~금 09:00~18:00]

-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· 자살예방센터 운영

[야간 및 휴일] [야간 - 18:00~익일 09:00 및 주말,공휴일]

- 경기도 1577-0199 전화상담 및 경찰 · 소방 응급출동 요청



경기도 경찰관 · 소방관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 대처 안내

* 경기도 31개 시 ·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

기관명	전화번호	기관명	전화번호
가평군자살예방센터	031-581-8881	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461-1771
광명시자살예방센터	02-2618-8255	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998-4005
부천시자살예방센터	032-654-4024	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592-5891
성남시자살예방센터	031-754-3220	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863-3632
수원시자살예방센터	031-214-7942	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678-5368
시흥시자살예방센터	031-316-6664	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469-2989
안산시자살예방센터	031-418-0123	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840-7320
양평군자살예방센터	031-770-3532	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	031-832-8106
여주시자살예방센터	031-886-3435	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374-8680
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	031-894-8089	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286-0949
이천시자살예방센터	031-637-2330	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458-0682
화성시자살예방센터	031-8015-2766	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942-2117
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968-2333	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658-9818
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	02-504-4440	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532-1655
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762-8728	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793-6552
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	031-550-8644		



자살 고위험군이란?





- 과거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
- 과거 자살관련 정신과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
- 지속적으로 자살 생각에 시달리는 사람
- 살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 (3무 : 무망감, 무가치감, 무연감)
- 자살에 대한 생각 뿐 아니라,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
- 소속감이 단절되어 있고,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

(출처 : Evidence Based Suicide Prevention 10 Risk Factors _Michel 2000, Plutchick 2000)

자살 고위험군 발견시 확인사항 및 대처방법



Q. 자살 고위험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무비판적으로 들어주세요	  <p>- 무비판적으로 들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</p>
곁에 있어주세요	  <p>-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.</p>

(출처 : 심리적 응급처치 SOS-HELP 대화법 중)

Q. '응급입원'이란?

'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' 제50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경찰과 의사의 동의 하에 72시간 동안 입원조치가 가능한 제도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(응급입원)

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.

경찰관집무집행법 제4조 (보호조치 등)

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(이하 "구조대상자"라 한다)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19구호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(응급환자의 이송 등)

①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이나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